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10시 56분



# 목차

목차	2
클린여수 청렴부패방지	3
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	3

클린여수 청렴부패방지

적극행정 면책신청 상담

주민감사청구 절차

##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

2016.10.24 조회수 680 등록자 진량

『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시행에 따라 『사회보장급여법』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

‘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오니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별첨 1.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. 1부.
2.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.
3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판단기준 1부. 끝.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.hwp (480 hit/ 31.0 KB) ↓

[미리보기](#)

청탁금지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판단기준.hwp (480 hit/ 20.0 KB) ↓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2019년 공직리더 청렴한마디 운영

등록된 글이 없습니다.

# Yeosu Web Contents

